

합기공 2차(부동산세법) 수정 및 정오 내용

페이지	前	後												
p.665	(1) 과세주체별 분류 더	(1) 과세주체별 분류 타(삭제)												
p.681	<p style="background-color: #FF00FF; color: white; padding: 2px;">부동산 관련 조세의 비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내용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종합부동산세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양도소득세</td> </tr> <tr> <td>가산세 및 가산금</td> <td>가산금</td> <td>가산세, 가산금</td> </tr> </table>	내용	종합부동산세	양도소득세	가산세 및 가산금	가산금	가산세, 가산금	<p style="background-color: #FF00FF; color: white; padding: 2px;">부동산 관련 조세의 비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내용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종합부동산세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양도소득세</td> </tr> <tr> <td>가산세 및 가산금</td> <td>납부지연가산세</td> <td>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</td> </tr> </table>	내용	종합부동산세	양도소득세	가산세 및 가산금	납부지연가산세	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
내용	종합부동산세	양도소득세												
가산세 및 가산금	가산금	가산세, 가산금												
내용	종합부동산세	양도소득세												
가산세 및 가산금	납부지연가산세	가산세, 납부지연가산세												
p.686	<p>기출문제</p> <p>해설 ▶ 부동산투자 및 금융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부동산 산업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.</p>	<p>기출문제</p> <p>해설 ▶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탁법의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과세한다.</p>												
p.715	<p>기출문제</p> <p>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.</p>	<p>기출문제</p> <p>④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중재산으로서 중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 무자로 한다.</p>												
p.717	<p>기출문제</p> <p>해설 ▶ 부동산투자 및 금융업은 우리나라의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부동산 산업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.</p>	<p>기출문제</p> <p>해설 ▶ ·초과누진세율 적용 : 가, 르 ·비례세율 적용 : 나, 드</p>												
p.728 (5/21)	<p>□ 오픈키워드</p> <p>• 세부담 상한액 :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: 100분의 300, 3주택이상 소유자 :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. 개정</p>	<p>□ 오픈키워드</p> <p>• 세부담 상한액 :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: 100분의 200, 3주택 이상 소유자 :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											

합기공 2차(부동산세법) 수정 및 정오 내용

페이지	前	後																
<p>p.732 (5/21)</p>	<p>6.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★★★★★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1 448 965 643"> <thead> <tr> <th>연령별 공제 (①) 개정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만 60세 이상~만 65세 미만</td> <td>100분의 20</td> </tr> <tr> <td>만 65세 이상~만 70세 미만</td> <td>100분의 30</td> </tr> <tr> <td>만 70세 이상~</td> <td>100분의 4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위 ①과 ②의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 내 중복공제 가능 개정</p> <p>7. 세부담상한 ★★★★★</p> <p>① 2주택 이하 소유자 : 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: 100분의 300 개정 ③ 3주택 이상 소유자 : 100분의 300</p> <p>기출문제</p> <p>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	연령별 공제 (①) 개정	공제율	만 60세 이상~만 65세 미만	100분의 20	만 65세 이상~만 70세 미만	100분의 30	만 70세 이상~	100분의 40	<p>6.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★★★★★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223 448 1767 643"> <thead> <tr> <th>연령별 공제 (①)</th> <th>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만 60세 이상~만 65세 미만</td> <td>100분의 10</td> </tr> <tr> <td>만 65세 이상~만 70세 미만</td> <td>100분의 20</td> </tr> <tr> <td>만 70세 이상~</td> <td>100분의 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위 ①과 ②의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 내 중복공제 가능</p> <p>7. 세부담상한 ★★★★★</p> <p>① 2주택 이하 소유자 : 100분의 150 ②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: 100분의 200 ③ 3주택 이상 소유자 : 100분의 300</p> <p>기출문제</p> <p>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p>	연령별 공제 (①)	공제율	만 60세 이상~만 65세 미만	100분의 10	만 65세 이상~만 70세 미만	100분의 20	만 70세 이상~	100분의 30
연령별 공제 (①) 개정	공제율																	
만 60세 이상~만 65세 미만	100분의 20																	
만 65세 이상~만 70세 미만	100분의 30																	
만 70세 이상~	100분의 40																	
연령별 공제 (①)	공제율																	
만 60세 이상~만 65세 미만	100분의 10																	
만 65세 이상~만 70세 미만	100분의 20																	
만 70세 이상~	100분의 30																	
<p>p.734 (5/21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이널 체크</p> <p>1주택자 세액공제</p> <p>① 연령별세액공제 ➡ 60세 이상(20%). 65세 이상(30%). 70세 이상(40%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파이널 체크</p> <p>1주택자 세액공제</p> <p>① 연령별세액공제 ➡ 60세 이상(10%). 65세 이상(20%). 70세 이상(30%)</p>																